

농약관리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농약 명칭·법명’ 바뀐다 ‘식물보호제·식물보호제관리법’으로

■ 홍보부

‘농약’ 명칭이 ‘식물보호제’로, ‘농약관리법’ 명이 ‘식물보호제관리법’으로 변경된다. 또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 의무가 강화되고 특히 농업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거나 밀수입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농약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청소년에 대한 농약판매가 금지되고 천연보호제를 제외한 전자상거래가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약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약 명칭을 식물보호제로 바꾸고 농약관리법의 명칭도 식물보호제관리법으로 변경했다. 농약에 대한 소비자 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미생물·천연물질을 원료로 한 천연보호제의 개발은 물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다.

그러나 기존의 농약 관리체계를 ‘화학농약’과 ‘천연보호제’로 나눠 이원화 한 부분은 특히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화학농약에 대한 명칭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작지 않

아 앞으로 있을 공청회 및 의견 개진시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식물보호제의 범위도 확대된다. 식물보호제 성분을 발생시키는 기구·장치도 식물보호제 범위에 포함도록 했다.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 의무를 강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등록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수입허용 대상을 확대하고 시험 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밀수입된 중국산 지베렐린이나 파클로뷰트리졸 등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등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농약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 유통 판매중이라도 안전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밝혀지면 등록 취소 후 해당 제조업체 등으로 하여금 회수·폐기도록 하고, 화학농약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전자통신망을 이용,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해당별 별칙조항도 한층 강화된다. 이밖에도 농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